2025년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특정감사 결과

2025. 10.

인천광역시중구
법무감사실

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5. 9. 8.(월) ~ 9. 12.(금) (5일간)

○ **감사범위** : 2020. 1월 ~ 2024. 12월 추진 업무 전반

○ **감 사 반** : 4명 [감사팀장 외 3명]

○ **중점감사 사항**

- 지방보조금 집행사항의 적정 여부
- 회계처리 기준 준수여부
- 인건비 등 운영 관련 규정 준수여부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여부

2. 감사결과

○ 지적사항 총괄

행정상(건)				재정상(건/천원)			신분상(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회수 추징	추급 환급	계	징계	훈계
6	2	4	-	5/335	3/205	2/130	-	-	-

[일련번호 : 1]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교육강사 수업 관리대장 작성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 라 한다)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여성회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조직 구성 및 임무)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강사의 복무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구여성회관 강사 운영 및 관리 계획」의 Ⅲ. 관리계획에서는 강사의 교육 및 복무 관리를 목적으로, 강사의 교육 시간 및 수업 관리를 위해 교육강사 수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교육강사 수업 관리대장(강의일지) 작성 소홀 현황 : 생략

여성회관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교육강사의 출퇴근 카드와 출석부 외에도 강사가 작성한 강의일지를 담당자가 확인·서명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표]와 같이 일부 강의일지가 누락되는 등 서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여성회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출석부 및 강사출퇴근 기록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나, 이번 감사과정에서 동일 강사의 강의 일지가 누락된 사실을 처음 인지하였으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구 여성회관장은

【 주 의 】

○ 「중구여성회관 강사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준수하여 교육강사 수업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작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인천광역시 중구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중구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 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20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 20페이지 및 「202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23페이지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에게 지급하며, 부양가족 요건과 지급액 및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부양가족 요건(동시 충족)

-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다만, 취학·요양 또는 거주의 형편이나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 지급액

해당연도	배우자	첫 째	둘 째	셋째 이후 자녀	비 고
2020년	월 40,000원	월 20,000원	월 60,000원	월 100,000원	
2024년	월 40,000원	월 30,000원	월 70,000원	월 11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등) : 1인당 월 20,000원

※ 배우자를 포함 직계존속은 4인 이내, 자녀수는 제한 없음

○ 지급방법

- 매월 부양가족 변동사항(만 19세 미만 자녀 등) 여부 확인 후 지급
-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종사자는 [붙임1]의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시설장에게 제출

※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붙임1]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급 사유의 발생 · 소멸에 해당하므로 지급 사유 발생·소멸 월분 가족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채용·퇴직 등 부양하는 종사자 본인의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분 가족수당 월액을 일할 계산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의 직원에게만 지급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가족수당 지급 현황 : 생략

여성회관에서는 가족수당 지급 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해야 하나, [표]와 같이 가족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여성회관에서는 가족수당의 오지급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가족수당 지급 시 부양가족 요건과 지급방법을 주의깊게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구 여성회관장은

【 시　　정 】

○ 미지급된 가족수당(2건/130천원)을 지급하기 바라며,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인천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고,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며,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를 시설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현황 : 생략

그러나, 여성회관에서는 [표]와 같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여야 할 사업을 운영비와 사업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여성회관에서는 [표]의 1번 사업은 20**년 당시 *** 보수공사, *** 증설 등에 따른 전기배선, 소방공사 완료 후 마무리 정비 차원에서 경미한 보수로 판단하여 운영비로 추진하였고, 2번 사업은 강의실 증설 등에 따른 사업홍보 및 이용자 안내 목적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라 판단하여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나, 향후에는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과목을 구분·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구 여성회관장은

【 주 의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인천광역시 중구

시 정 요 구

[제 목]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채권 부과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인지세법」 및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건에 대하여 업체로부터 인지세 납부와 지역개발채권 매입 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이하 “과세문서”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과세문서	세 액
1~2. 이하 생략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이하 생략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12. 이하 생략	이하 생략

또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의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제2항 관련)

매입대상	매입기준	비고
1～3. 이하 생략	-	[조례 제6989호, 2023. 2. 20., 일부개정] (2023. 3. 1.부터 시행)
4.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 용역계약, 물품구매 · 수리 · 제조계약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출연한 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	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개정 전 2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2023. 2. 20. 개정된「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3. 3. 1. 시행) [별표 1]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이 상향되어 2023. 3. 1.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이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대가지급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기준이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1] 수입인지세 미납부 현황 : 생략

여성회관에서는 [표 1]과 같이 수입인지(인지세 2건/40,000원) 납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표 2] 지역개발채권 미징구・과징구 현황 : 생략

여성회관에서는 [표 2]와 같이 연번 1번 사업은 지역개발채권을 미징구(1건/165,000원) 하였으며, 연번 2, 3번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닌 전기, 소방공사임에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2건/145,000원) 하였으며, 연번 4번 사업은 당시 매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금액임에도 지역개발채권을 징구(1건/95,000원) 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여성회관에서는 수입인지 누락과 지역개발채권 미징구·과징구와 관련해서는 관리상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계약금액 기준별 채권 매입·징구 체크리스트 작성 등 계약단계부터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구 여성회관장은

【 시 정 】

○ 미매입한 수입인지 2건/40,000원과 지역개발채권 1건/165,000원은 추징하여 사후증빙(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사 등의 계약 시 「인지세법」,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수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정기하자검사 및 만료검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 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에 따라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하며,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계약 건에 대하여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하자정기・만료검사 현황 : 생략

그러나, 여성회관에서는 [표]와 같이 8건 사업에 대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정기검사 및 만료검사를 미실시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여성회관에서는 20**년에는 수탁기관이 (사) *****에서 혼합직영체제로 변경되는 과정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내외적 변수가 많아 업무가 안정되지 못한 시기였으며, 「지방계약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체계적인 인수인계 미흡으로 관리가 소홀하여 발생한 것으로 향후 모든 계약 건에 대해 하자담보 책임기관을 철저히 확인하고 정기검사 및 만료검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구 여성회관장은

【 주 의 】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 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기록 관리)에 따르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는 차량 유류 수불대장, 차량 운행일지, 차량 이력 카드 등 그 밖에 차량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현황 : 생략

그러나, 여성회관에서는 [표]와 같이 공용차량을 운행하여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여성회관에서는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철저히 작성하고 관리하였으나, 일부 출장 시 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감사 과정에서 확인하였으며, 이는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유류 대장 및 운행일지 등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기록·보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구 여성회관장은

【 주 의 】

○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공용차량 이용 시 차량 운행일지 등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작성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